

##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」 지정계획 공고

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,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」 제5조에 따라,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'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'을 아래와 같이 지정코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12. 1

중소기업청장

### □ 지정 목적

-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할 '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'(이하 "기술보호 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

### □ 기술보호 전담기관 업무 (\*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)

-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
- 중소기업기술 보호 시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한 조사·연구
-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업무\*
-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.

1. 중소기업기술보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
2.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
3. 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
4.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와 관련된 제도 연구에 관한 업무
5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
6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업무
7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
8. 법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업무
9. 법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

## □ 지정 기준

-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
-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고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
  - 전담인력의 경우, 과반수 이상이 i)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업무, 정부지원사업 또는 연구개발·관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, ii) 기술 또는 보안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일 것
-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을 갖추고,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 및 방화벽,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를 보유할 것
  - 전용 업무공간의 경우, 82㎡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추고, 25㎡ 이상의 상담실·회의실을 2개 이상 구비할 것

## □ 평가 및 신청방법

- (평가방법)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업무수행 능력\* 심사

\* 전담조직 및 인력, 전용 업무공간 및 시설·장비,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업무 수행역량 등

※ 필요시 신청기관 현장 실사 및 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한 발표심사 실시  
- 이 경우 대상기관에 별도통지 예정

- (신청방법) 지정 신청서 (별지서식 참조) 및 사업계획서 제출

- (신청기간) '14. 12. 1(월) ~ 12. 11(목) 18:00까지

\*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## □ 향후 일정

- (신청접수) '14. 12. 1(월) ~ 12. 11(목)

- (서류심사) '14. 12. 15(월) ~ 12. 16(화)

- (선정 및 지정 공고) ~ '14. 12. 19(금)

## □ 신청 및 문의처

- (제출처) (우) 302-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
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

- (문의처) ☎ 042-481-4459, 4400

[별지 서식]

##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

\*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신청기관	기관명 또는 단체명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대표자	전화번호
	소재지	
주요업무 분야		
설립근거		
설립목적		
설립 연월일		

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14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제 2항, 「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」 제 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소기업청장
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 7조제 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 7조제 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 7조제 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-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